의안번호	2200964
의 뢰 인	황명선의원
회 답 일	2024.07.22.
추계번호	24A104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 안 제11조의2제1항[1)2)]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는 장애인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해당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함(제13항)[3)]	의무규정

---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64)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64)
부칙 제2조(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대상시설부터 적용한다.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사업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민간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지원[4]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민간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은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 감소 및 설치 촉진을 위하여 금융 지원 및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후 설치될 대상시설의 규모 및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단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에 대한 지원 규모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고 이를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므로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어려움

○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제11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치

---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생 략)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하는 대상시설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규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규정된 대상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비율 및 종류는 동법 시행령 제18조의7[5]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참고로 환경부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세부사업[6]인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의 내역사업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에 2024년 예산 기준으로 4,365억원을 편성하였음

❑ 이에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어「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6) 세부사업 코드: 1633-312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신헌태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헌태	02-6788-4653	heontshin@nabo.go.kr